제2017-292호

「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」 제3조제3항에 따른 질병군 분류 공고

2017. 4. 20.

보 건 복 지 부

「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」 제3조제3항에 따른 질병군 분류 공고

Ⅰ. 근거 법령

□ 「의료법」 제3조의4 제1항제3호, 「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및 별표 제4호 가목, 제3조제4항, **「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」 제3조제3항** 등

> 「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」 제3조(질병군별 질병의 종류)
>
> ①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을 판별하기 위한 질병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.
>
>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, **환자 분류체계 적용 시 질병의 중증분류 적정성이 지정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**할 수 있다.

Ⅱ. 내 용

1 주요 내용

○ 「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」 제3조제1항의 별표1에서 환자분류체계를 활용한 질병의 종류와 중증분류를 열거함에도 불구하고, 제3항에 따르면 **"환자 분류체계 적용 시 질병의 중증분류 적정성이 지정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."**고 규정한 바,

- 제3기 상급종합병원('18~'20) 지정·평가에 환자분류체계(KDRG Ver 3.5)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사례들 중 일부를 형평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아래와 같이 보정함

- 아 래 -

- ‘유방 악성종양제거술’과 ‘유방재건술’ 동시수술로 인해 **이차적 치료 목적인 ‘유방재건술’ 질병군으로 결정된** 경우, 일반에서 전문으로 보정

-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량에 비해 전문질병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아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 심각한 정형외과 등에 대하여

· 전문질병군으로 분류될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**‘복잡행위수술(‘14.8월 신설)’ 중 종합병원 이상 발생비율이 높은 수술**을 선정, 이러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질병군이 일반 또는 단순으로 분류된 경우 전문으로 보정

※ 세부내용 : 붙임 참조

2 적 용

○ 본 별도 공고의 내용은 **제3기 상급종합병원(‘18~’20)의 지정 및 평가에만** 적용함

*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시(’20년 평가 예정) 질환의 중증분류는 환자분류체계 Ver 4.0 이상을 기반으로 정비할 계획임

○ 유방 악성종양제거술과 유방재건술 동시수술의 경우, 제3기 상급종합병원 환자구성비율 평가기간(‘15년~’17년 상반기) 중 유방재건술이 급여화된 ‘15년4월 이후(적용시점)부터 보정가능

붙임	「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」 제3조제3항에 따른 질병군 분류 공고(안) 세부내용

○ ‘유방 악성종양제거술’과 ‘유방재건술’ 동시수술의 경우

- 유방암의 주 치료인 ‘유방 악성종양제거술’과 이차적 목적인 ‘유방재건술’ 동시수술시 중증도를 ‘전문’으로 보정

시행 수술*	당초 중증도	보정 중증도
유방 악성종양제거술만 실시	전문	전문
유방 악성종양제거술 + 유방재건술 동시수술	**일반**	**전문**
유방재건술만 실시	일반	일반

* 관련질병군: 유방 악성종양제거술(J021, J022, J031), 유방재건술(J091, J092, J093)

○ 중증도 보정대상 정형외과 신설 수가의 경우

- 아래 49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중증도 분류가 ‘일반’ 또는 ‘단순’인 경우 중증도를 ‘전문’으로 보정

연번	수가코드	복잡수술 명
1	N3728	인공관절재치환술-전치환[주관절]-인공관절삽입물의제거를동시에실시한경우
2	N3718	인공관절재치환술-전치환[주관절]
3	N0688	급성화농성관절염절개술(주관절,완관절,족관절)
4	N4726	인공관절재치환술-부분치환[견관절]-인공관절삽입물의제거를동시에실시한경우
5	N1466	척추고정술[기기,기구사용고정포함]-전방고정-요추
6	N0680	급성화농성관절염절개술(고관절)
7	N2498	척추후궁절제술-흉추
8	N4727	인공관절재치환술-부분치환[슬관절]-인공관절삽입물의제거를동시에실시한경우
9	N2710	인공관절치환술-부분치환술[고관절]
10	N1460	척추고정술[기기,기구사용고정포함]-후방고정-요추-Cage를이용한추체간유합술
11	N2070	인공관절치환술-전치환[고관절]
12	N2497	척추후궁절제술-경추
13	N0986	체외금속고정술(상완골,하퇴골)
14	N4720	인공관절재치환술-부분치환[고관절]-인공관절삽입물의제거를동시에실시한경우
15	N3720	인공관절재치환술-전치환[고관절]-인공관절삽입물의제거를동시에실시한경우
16	N2079	인공관절치환술-전치환[족관절]

연번	수가코드	복잡수술 명
17	O1182	사골동접형골동수술-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
18	N0737	관절고정술-족관절에 삼중관절고정술을 실시한 경우
19	N2716	인공관절치환술-부분치환술[견관절]
20	N2499	척추후궁절제술-요추
21	N0611	사지골절정복술[복잡골절포함]-관혈적[대퇴골]
22	N1469	척추고정술[기기,기구사용고정포함]-후방고정-요추
23	N3710	인공관절재치환술-전치환[고관절]
24	N4710	인공관절재치환술-부분치환[고관절]
25	O1152	상악동사골동접형골동근본수술-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
26	N0025	골수염또는골농양수술[골천공술,골개창술,배형성형술,골부분절제술포함]-상완골,전완골,쇄골
27	N3716	인공관절재치환술-전치환[견관절]
28	N2718	인공관절치환술-부분치환술[주관절]
29	N2078	인공관절치환술-전치환[주관절]
30	N0631	가관절수술(대퇴골)
31	N3727	인공관절재치환술-전치환[슬관절]-인공관절삽입물의제거를동시에실시한경우
32	N0634	가관절수술(쇄골,슬개골,수근골,족근골)
33	O1162	전두동사골동근본수술-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
34	N2076	인공관절치환술-전치환[견관절]
35	N4717	인공관절재치환술-부분치환[슬관절]
36	N0736	관절고정술[주관절,완관절,족관절]
37	N0612	사지골절정복술[복잡골절포함]-관혈적[상완골,견갑골]
38	O1172	전두동사골동접형골동근본수술-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
39	N0820	반월상연골이식술
40	N3717	인공관절재치환술-전치환[슬관절]
41	N0706	사지관절절제술[활막절제를포함]-고관절
42	N0613	사지골절정복술[복잡골절포함]-관혈적[전완골,하퇴골]-요척골 동시, 경비골 동시
43	N0689	급성화농성관절염절개술(지관절)
44	N2717	인공관절치환술-부분치환술[슬관절]
45	N0632	가관절수술(상완골,전완골,하퇴골)
46	N3719	인공관절재치환술-전치환[족관절]
47	N4716	인공관절재치환술-부분치환[견관절]
48	N0024	골수염또는골농양수술[골천공술,골개창술,배형성형술,골부분절제술포함]-골반골,대퇴골,하퇴골
49	N4719	인공관절재치환술-부분치환[족관절]